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4. 9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4. 9
- 라. 上程日字 : 1999. 4. 14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地域經濟課長 文哲柱)

가. 提案理由

-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에 따른 직제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하는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계장”에서 “기업지원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동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지원대상」을
 - 서산시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도록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고,
- 또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문 : 기금의 지원을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 가능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 :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57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4. 9.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	----

제출년월일 : 1999. 4. 9.

제출자 : 서산시장

□ 제안이유

-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애 따른 직제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함(안 제7조).
- 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계장에서 기업지원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18조).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 '99 제1차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충청남도 '99. 2. 18)
-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99-80호('99. 3. 26 ~ 4. 5)
 - 제출의견 없음.
- 개정조례는 '99. 제1차 서산시경영안정자금 지원분부터 적용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중 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업무담당계장”을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용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산시 안에 소재한 자</p> <p>2.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p>	<p>제7조(지원대상)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용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중 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 ----- ----- ----- 기업지원담당 ----- -----</p>